

투자설명서 변경공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9조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1. 변경 대상 펀드

NO	펀드명칭
1	프랭클린템플턴 친디아 증권 자투자신탁(주식)

2.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투자설명서 전반	Class A: 77156 Class C: 94139 Class C-e: 94140 Class C-l: 94141 Class C-F: 94142	Class A: 77156 Class C1: 94139 Class C2: 28537 Class C3: 28539 Class C4: 28540 Class C5: 28541 Class C-e: 94140 Class C-l: 94141 Class C-F: 94142	CDSC 전환으로 인한 Class C 명칭 변경 (→Class C1) 및 Class C2, C3, C4, C5 신설
제2부.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u>정정전 1)</u>	<u>정정후 1)</u>	
제2부. 11. 가. (2) 종류별 가입자격	<u>정정전 2)</u>	<u>정정후 2)</u>	
제2부. 11. 다. 수익증권간 전환	<u>(신설)</u>	<u>정정후 3)</u>	
제2부. 6. 나. 종류형 구조	CLASS A 판매회사 보수 : 연 1.20% CLASS C 판매회사 보수 : 연 1.50%	CLASS A 판매회사 보수 : 연 0.90% CLASS C1 판매회사 보수 : 연 1.50%	CDSC 전환으로 인한 Class C 명칭 변경 (→Class C1) 및 Class C2, C3,

<p>제2부. 13. 나. 집합투자 기구에 부 과되는 보 수 및 비 용 (연 간, %)</p>	<p>CLASS C-e 판매회사 보수 : 연 1.32%</p>	<p>CLASS C2 판매회사 보수 : 연 1.40% CLASS C3 판매회사 보수 : 연 1.30% CLASS C4 판매회사 보수 : 연 1.20% CLASS C5 판매회사 보수 : 연 1.10% CLASS C-e 판매회사 보수 : 연 1.00%</p>	<p>C4, C5 신설 & Class A, Class C-e 판매보수 인하</p>
<p>제2부. 14. 나. (2) 수익 자에 대한 과세 - 원 천징수 원 칙</p>	<p>종전의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 제2항에 의하여 집합투자기구 등으로부터의 배당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외국상장주식의 매매 또는 평가 손실은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74조제3항에 따라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과세 이익을 한도로 집합투자기구 등으로부터의 배당소득금액에서 차감하여 과세이익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2010년 1월 1일 이후에 신규로 가입하거나 신규로 매수하는 집합투자증권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p>	<p>종전의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 제2항에 의하여 집합투자기구 등으로부터의 배당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외국상장주식의 매매 또는 평가 손실은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74조제3항에 따라 2010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과세 이익을 한도로 집합투자기구 등으로부터의 배당소득금액에서 차감하여 과세이익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2010년 1월 1일 이후에 신규로 가입하거나 신규로 매수하는 집합투자증권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p>	<p>조세특례제한법 부칙 개정사항 반영 (외국상장주식의 매매 및 평가 손실에 대한 상계 기간 연장)</p>
<p>제4부. 1. 가. 회사 개요</p>	<p>자본금 : 150억</p>	<p>자본금 : 250억</p>	<p>집합투자업자의 자본금 증가 반영</p>
<p>제4부. 4. 가. 회사 의 개요</p>	<p>주소 및 연락처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3-2번 지 굿모닝 타워 19층, (우)150-712 (대표전화 02-3770-4450)</p>	<p>주소 및 연락처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7-3 번지 하나대투증권빌딩 18층, (우)150-705 (대표전화 02-2014-2114)</p>	<p>일반사무관리회사의 주소 및 연락처 변경 반영</p>
<p>제5부. 2. 집합투자 기구의 해 지에 관한 사항</p>	<p>▶ 임의해지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 액이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 는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p>	<p>▶ 임의해지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을</p>	<p>소규모펀드 임의해지 및 수시공시 관련 자본시장법시행령 개정사항 반영</p>

		<u>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u>
제5부. 3. 나. (2) 수 시공시	1~7. (생략) 8. <u>그 밖에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u>	1~7. (생략) 8. <u>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집합투자기구(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로서 설정 및 설립 이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법 제192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u> 9. <u>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및 설립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법 제192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u> 10. <u>그 밖에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u>

정정전1)

일 자	내 용
2007년 6월 14일	최초설정
2007년 12월 14일	약관 변경: 종류형 전환
2008년 5월 16일	약관 변경: Class I 및 Class F 판매기준 변경
2008년 10월 6일	약관 변경: Class A 의 환매수수료 변경
2009년 4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펀드명칭 변경 : 프랭클린 템플턴 친디아 주식형 자투자신탁 → 프랭클린템플턴 친디아 증권 자투자신탁(주식)

정정후1)

일 자	내 용
2007년 6월 14일	최초설정
2007년 12월 14일	약관 변경: 종류형 전환
2008년 5월 16일	약관 변경: Class I 및 Class F 판매기준 변경
2008년 10월 6일	약관 변경: Class A 의 환매수수료 변경

2009년 4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펀드명칭 변경 : 프랭클린 템플턴 친디아 주식형 자투자신탁 → 프랭클린템플턴 친디아 증권 자투자신탁(주식)
2010년 2월 26일	세법 개정 반영
2010년 3월 16일	매입기준가 적용일 변경
2010년 5월 3일	판매회사 보수 인하 (Class C 수익증권)
2011년 1월 10일	CDSC 전환으로 인한 Class C 명칭 변경 (→Class C1) 및 Class C2, C3, C4, C5 신설 & 판매회사 보수 인하 (Class A, Class C-e 수익증권)

정정전 2)

종류	가입자격
Class A	가입제한 없으며,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수익증권에 가입하고자 하는 투자자
Class C	가입제한 없으며,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에 가입하고자 하는 투자자
Class C-e	온라인을 통해 가입하고자 하는 투자자
Class C-I	최초납입금액 50억원 이상의 개인 또는 법인
Class C-F	1.기관투자자/기금 2.최초납입금액 100억원 이상인 개인 3.최초납입금액 500억원 이상인 법인 4.집합투자기구, 변액보험 5.판매사 랩어카운트를 통해 가입하고자 하는 투자자 6.판매사 특정금전신탁을 통해 가입하고자 하는 투자자

정정후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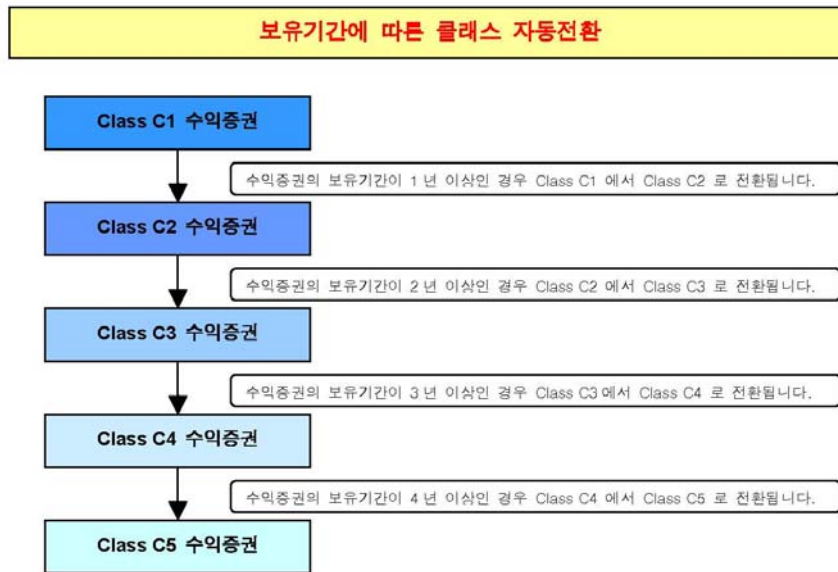
종류	가입자격
Class A	가입제한 없으며,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수익증권에 가입하고자 하는 투자자
Class C1	가입제한 없으며,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에 가입하고자 하는 투자자
Class C2	Class C1 수익증권을 보유한 수익자
Class C3	Class C2 수익증권을 보유한 수익자
Class C4	Class C3 수익증권을 보유한 수익자
Class C5	Class C4 수익증권을 보유한 수익자
Class C-e	온라인을 통해 가입하고자 하는 투자자
Class C-I	최초납입금액 50억원 이상의 개인 또는 법인
Class C-F	1.기관투자자/기금 2.최초납입금액 100억원 이상인 개인 3.최초납입금액 500억원 이상인 법인

- 4. 집합투자기구, 변액보험
- 5. 판매사 랩어카운트를 통해 가입하고자 하는 투자자
- 6. 판매사 특정금전신탁을 통해 가입하고자 하는 투자자

정정후 3)

다. 수익증권 간 전환

- (1) 판매회사는 수익자의 전환청구와 관계없이 다음에서 정하는 수익증권의 보유기간(수익증권의 최초 매수일을 기산일로 하여 다른 종류 수익증권으로 전환하기 위해 전환시 적용되는 당해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적용일까지를 말한다)에 따라 다른 종류의 수익증권으로 자동으로 전환합니다. 다만, 수익자가 최초로 매입하는 수익증권은 Class C1 수익증권에 한합니다.



- (2) 전환하는 경우 위의 각 해당 전환일에 전환처리하되 전환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에 전환처리합니다.
- (3) 전환하는 경우 적용되는 기준가격은 전환하고자 하는 종류 수익증권의 해당 전환일의 기준가격으로 합니다.
- (4) 전환 이전에 추가 매수 및 환매(일부환매를 포함한다)를 청구한 수익증권에 대하여는 매수 및 환매 절차가 완료되는 일자의 익영업일에 전환할 수 있습니다.
- (5) 전환에 따른 별도의 수수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 (6) 수익증권을 전환한 후 환매를 청구하는 경우 환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전환 후 추가 납입분에 대해서는(환매수수료 부과기간이 경과하지 않았을 경우) 환매수수료를 징구합니다.

3. 효력 발생일

2011년 01월 10일

자세한 내용은 변경된 투자설명서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프랭클린템플턴 투신운용 (주)